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해구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국재해구호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사업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관련 내용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 「재해구호법(법률 제20031호, 2024. 1. 16. 공포, 2024. 7. 17. 시행)」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,

재난심리회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권고사항, 법률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준치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법제처 권고사항 및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시 적용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및 관련 법령 현행화(안 제2조 제1항 제5호)

법 제4조제1항제7호의 ‘심리진단’을 재난 시 심리회복지원 업무에 부합되도록 ‘심리적 응급처치’로 변경하고 관련 법조문 및 기관을 현행화함

나.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사실 공표 시 공표 내용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23조의4)

행정안전부장관이 협회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,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

하고, 공표 전에는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협회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

다.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(안 별표 3 제1호 다목 및 라목)

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기준시점을 ‘과태료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적발시’로 별표 3 제1호 다목 문구를 수정하고,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‘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’로 별표 3 제1호 라목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

라.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및 추가(안 별표 3 제2호 가목~사목)

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, 법률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,

법 제36조제1항 제7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‘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자’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가목 중 “심리진단”을 “심리적 응급처치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제3호 및 제15조2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의 진료 연계

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4(시정명령 등의 공표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1. 시정명령 사유 및 내용

2.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협

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”를 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”로, “적발한”을 “하여 적발된”으로, “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150	200	250
나.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2호	200	300	400
다. 법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·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3호	150	200	250
라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	법 제36조	200	300	400

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	제1항제4호			
마. 모집종사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 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 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5호	175	250	325
바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6호	225	350	500
사.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 기피 또는 방해한 자	법 제36조 제1항제7호	225	350	500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3의제2호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호의 방법 등)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	제2조(구호의 방법 등) ①----- ----- ----- 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(이하 “심리회복”이라 한다)의 지원: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.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<u>심리진단</u>	가. ----- <u>심리적 응급처치</u>
나. 「 <u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제4호에 따른 <u>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의 진료 연계</u>	나. 「 <u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제3호 및 제15조2에 따른 <u>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의 진료 연계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4(시정명령 등의 공표)</u> ① <u>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</u>

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1. 시정명령 사유 및 내용

2.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난구호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332